

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표 10] <개정 2024. 1. 9.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(제61조제2항 관련)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징금 금액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| 법 제67조제2항제2호 | 2억원 이내 |
| 2.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| 법 제65조제4항 전단 | 10억원 이내 |
| 3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67조제2항제1호 | 6억원 이내 |